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87

발의연월일: 2024. 12. 6.

발 의 자:이수진·정태호·김정호

남인순 • 허성무 • 민형배

박 정ㆍ이연희ㆍ송옥주

한정애 · 박홍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필요한 경우국회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호 업무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반헌법적 계엄 등으로 인하여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위험상황에놓여 있음.

이에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는 등으로 국회의경호 및 내외부의 질서유지에 대한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소속의 경위 및 국회경비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헌법적 정권의 의회 침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를 "경위 및 제3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경위는 제1항의 경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의장의 지휘·감독 권한은 「계엄법」 등 다른 법 령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4조의2(국회경비대) 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둔다.
 - ② 국회경비대는 제1항의 질서유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국회경비대의 원활한 질서유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 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회경비대와 제3항에 따라 국회경비대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의장의 지휘·감독 권한은 「계엄법」 등 다른 법 령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생략) < <u>〈신 설〉</u> ② (생략)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위는 제1항의 경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경위 및 제3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나 감독을 받으며
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u><신 설></u>	⑤ 제4항에 따른 의장의 지휘 ·감독 권한은 「계엄법」 등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영향 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제144조의2(국회경비대) 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 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둔다. ② 국회경비대는 제1항의 질서

유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장비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국회경비대의 원활한 질서유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회경비대와 제3항에 따라 국회경비대에 파견된 경찰공무 원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 으며,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 물 밖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 행한다.
- 5 제4항에 따른 의장의 지휘 ·감독 권한은 「계엄법」 등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영향 을 받지 아니한다.